

대구예술대학교 자율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

(제정 2016.01.25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자율전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일반원칙) ① 자율전공 입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1학년생은 2학년 진학 전에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.

③ 전공의 선택은 진급 당해년도 편제표에 있는 전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. 단, 모집중지 된 전공을 선택할 수 없다.

제3조 (교육과정의 이수) ① 자율전공 학생은 우리 대학교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② 1학년 재학 중 우리 대학교 1학년에 개설 (모집중지 전공 제외) 되어 있는 모든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, 이수구분은 개설과목의 이수구분을 그대로 따른다.

단, 개설전공에서 수강제한을 요청한 교과목은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4조 (전공 신청 자격) ① 전공 신청은 자율전공 학생으로서 1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고 최소 33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, 휴학 등의 사유로 2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도 동일하다.

단, 1학년을 모두 이수하고도 총 취득학점이 33학점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전공 배정 지망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여석이 있는 전공에 배정한다.

② 제1항에서 정한 총 취득학점은 하계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도 포함한다.

제5조 (전공의 배정과 신청) ① 제4조의 자격을 갖춘 학생은 전공신청기간 중 희망하는 전공을 1지망에서 2지망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전공별 배정인원은 매학년도 해당 전공의 입학정원의 30% 이내로 한다. 단, 해당 전공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공의 신청을 받아 증원할 수 있되, 해당 전공의 입학정원의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전공주임은 전공배정을 신청한 학생들의 전공을 차기 학기 개강 전에 배정하여야 하며 1지망 전공의 배정지망 인원이 ②항에서 정한 각 전공별 배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(평점평균) 순으로 배정하되, 평점평균이 동점인 경우는 취득학점 순으로 배정하며, 취득학점도 동점인 경우는 모두 동일 지망 전공에 배정한다.

④ 전항에 따라 1지망 전공으로 배정되지 못한 경우는 2지망 전공부터 순차적으로 배정인원에 여석이 있는 전공에 배정한다.

⑤ 전공 신청 대상자가 소정기간 중 전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공주임이 여석이 있는 전공에 배정할 수 있다.

⑥ 전항 이외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제6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 월 20일부터 시행한다.